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목 차 ·

I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모집계획	1
1.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1
2.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5
3. 홍보 계획	8
4. 추진 일정	8
5. 행정 사항	9
II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17
III 꿈나래통장 신청서식	31
IV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Q&A	41
1. 사업 취지 · 배경 관련	43
2. 신청 및 선발과정	44
3. 신청구비서류	49
4. 저축 신청 · 유지 · 해지	50
V 2018년 꿈나래 통장 사업 Q&A	57
1. 사업안내	59
2. 신청자격	59
3. 신청 및 접수	62
4. 추천 및 선발절차	63
5. 저축 관련	64
6. 기타 지원서비스 관련	65
VI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 기피 사유서(서식)	67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

저소득 근로청년들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장사업 신규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함

I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계획

□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2,000명
- 신청기간 : '18.3.15.(목)~4. 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 해당 출생일 : 1983.3.16.~2000.3.15.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공고일 ('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

<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세부 운영방법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10만원·15만원	적립금액의 100%	1,080만원+이자	사업비 : 시비80%, 민간재원 20%

- 저축금리 : ‘우리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본인소득(월 220만원 이하) 확인 : 행복e음 자료 활용

1. 조회순서 : ① 건강보험료 납부액(전월 표준보수월액) → ②국민연금(전월 표준보수월액)납부액 → ③국세청 자료('16~17년 자료)
2. 행복e음 자료 없는 경우(일용직 근로자 등)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제출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산정 : 배우자, 부모 소득·재산 조회
 -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

<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 최대 6개월 일시중지
 - ※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기간 중 적립한 금액 전액 지급 :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근로장려금 + 이자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과 부모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융 조회
 - ※ 형제·자매·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가구원수에 본인 미포함
 - 가구원수 산정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일 경우에만 포함
 - ※ 부양의무자(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필수 포함

- 신청제외 대상자

-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본인이 교육급여 받는 경우) 수급자
-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이자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 ④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 및 중도해지 가구 포함)
-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 청년통장 등
 -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대상 월 3만원 저축)' 참여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
- ⑥ 2018년 「꿈나래 통장」 신청가구
-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등
 - 행복e음 건강보험료 등 자료 확인 불가능시 본인소득 산정에 활용

□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서류심사결과 통보) ⇒ 2차 면접심사(복지재단 면접위원 선정) ⇒ 최종선정

○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접수는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이메일·우편 접수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내용 충분히 습득 후 안내
 - ※ 신청서류 출력 서비스, 등본 공용발급, 접수창구 풋말 설치 등

○ <1차>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배점 : 객관적 기준(65점) + 주관적 기준(30점) + 기타 평점(5점)
 - ▶ 객관적 기준 : 시 거주기간, 근무경력, 자산현황, 저축가능성, 가구특성
 - ▶ 주관적 기준 : 저축액 충당계획, 저축액 활용계획 등
 -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정보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모집인원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 <2차> 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선정(자치구별 2인 1조)
 - ※ 면접위원 선정시 '15~'17년 면접 관련, 민원발생 위원 선정 배제
- 기관별 역할
 - ▶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 ▶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면접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 ▶ 2인 1조 심사팀 구성하여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 ▶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부여
 - ※ 면접대상자 사정으로 해당 자치구 면접 불가시 타 자치구 면접 안내
- 심사항목 :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 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II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기간 : '18.3.15.(목)~4.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18.3.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구 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기준 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 의자인 경우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 ◆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세부 운영방법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 매칭적립금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0짜	504만원+0짜	720만원+0짜	270만원+0짜	378만원+0짜	540만원+0짜	648만원+0짜
총 적립금 (5년)	600만원+0짜	840만원+0짜	1,200만원+0짜	450만원+0짜	630만원+0짜	900만원+0짜	1,080만원+0짜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 저축금리 : '우리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계좌개설 : 서울시복지재단 명의 개설(임의해약 방지)
- 적립금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 : 행복e음 자료 활용
 -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구 중 2촌 직계존속(조부모) 이내 재산·소득조회

<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 + 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에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 + 이자
 - 실직·사고 등으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신청가능
 - ※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 + 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 + 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기간 중 적립한 금액 전액 지급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이자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금 + 이자 지급

□ 선발절차

▶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접수는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이메일·팩스 접수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내용 충분히 습득 후 안내
 - ※ 신청서류 출력 서비스, 등본 공용발급, 접수창구 풋말 설치 등

○ <1차> 서류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배점(총 100점)
 - ▶ 시 거주기간, 가족 수, 저축가능성,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및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구분심사(선정비율 : 자치구 자율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의 정보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의 130%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 <2차> 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 선정
- 기관별 역할
 - ▶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 ▶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 ▶ 2인 1조 심사팀 구성하여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 ▶ 위원별 개별채점이 아닌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부여
- 심사항목
 - ▶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Ⅲ 홍보 계획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운영 : 정보화기획담당관
- 서울시 공식블로그, 서울시 뉴스(지하철역사, 신청사 외곽 홍보 등)
- 홍보포스터(7,800매)·전단지(75,500부) 제작·배부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지하철 승강장(275개역) 등 배부
-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보도자료 제공, 지역방송,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게시
- ‘청년허브’, ‘청년지갑’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

Ⅳ 추진 일정

- 자치구 교육 : '18.3.12.
-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18.3.15. ~ 4. 6.
- 공적조회(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통보 : '18.4. 7. ~ 8.10.
 - 금융조회(신용·부채) 및 중복가입 조회요청(자치구 → 시) : '18. 5.11.까지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결과 통보(시 → 자치구) : '18. 7.13.까지
 - ※ 복지부 통장사업 중복여부 조사 : 자치구, 복지재단
 - 면접대상자 명단 통보(자치구 → 시·복지재단) : '18.8.10.까지
- 면접심사(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8. 8.18 ~ 8.19.
 - 기간 중 주말 포함 면접실시 : '18. 8.25. ~ 8.26.
- 최종 합격자 발표(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18. 8. 31.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18. 9. 12.

V 행정 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 및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 직원교육 실시 : 이메일, 우편 접수 안내
- 동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직원 이메일, 주소 제출

자치구	동주민센터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종로구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 「행복e음 정보 없는 신청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통상 4주 정도 소요되므로 명단 취합 후 조사 요청
- 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

- 모집 전체일정에 맞추어 제출(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 신청인 필수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공용 발급
- 주민등록초본(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용),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 기본증명서(꿈나래 통장 아동 친권) 확인용으로 일괄 발급·출력
-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복지부 유사사업 및 중랑플러스 등 자치구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 신청서식 요청 민원인에게 신청서류 출력 제공
- 자치구·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업로드 게재
- 신청자별 각종 접수관련 서류, 접수인원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자치구 : 소득·재산조사 및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선정, 시·복지재단 송부
 - 공적조회 후 통장사업별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서류심사 결과 면접대상자 선정 및 면접심사 진행
 - 최종합격자 및 약정체결 개별 안내 등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 통장지원사업, 경기도 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여부 조회
- 면접진행, 면접 심사위원 교육, 사례기관 약정식 진행 교육 등 실시
- 면접위원 선정 및 자치구별 배정
- 약정식 준비 및 청년통장 약정식 진행

우리은행

- 신청자 신용 및 부채상황 등 금융조회, 적용이자 결정 및 지급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선발인원

□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 배정기준

- 자치구별 청년인구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배정인원 조정(원칙)
- 청년인구수 많은 5개구(송파·관악·강서·강남·노원) 배정인원 과다로 20개 자치구에 인원조정 배정

○ 자치구별 선발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연번	자치구	청년인구 (명)	배정인원
1	종로	37,994	37	14	마포	99,014	88
2	중구	30,274	31	15	양천	106,192	92
3	용산	54,937	51	16	강서	152,354	98
4	성동	77,220	70	17	구로	95,512	86
5	광진	99,668	88	18	금천	57,902	55
6	동대문	86,752	78	19	영등포	94,313	84
7	중랑	97,290	88	20	동작	104,923	93
8	성북	103,716	90	21	관악	157,958	98
9	강북	71,867	65	22	서초	101,927	89
10	도봉	76,830	69	23	강남	138,055	98
11	노원	126,388	98	24	송파	164,074	98
12	은평	109,539	96	25	강동	102,183	90
13	서대문	77,060	70	합 계		2,423,882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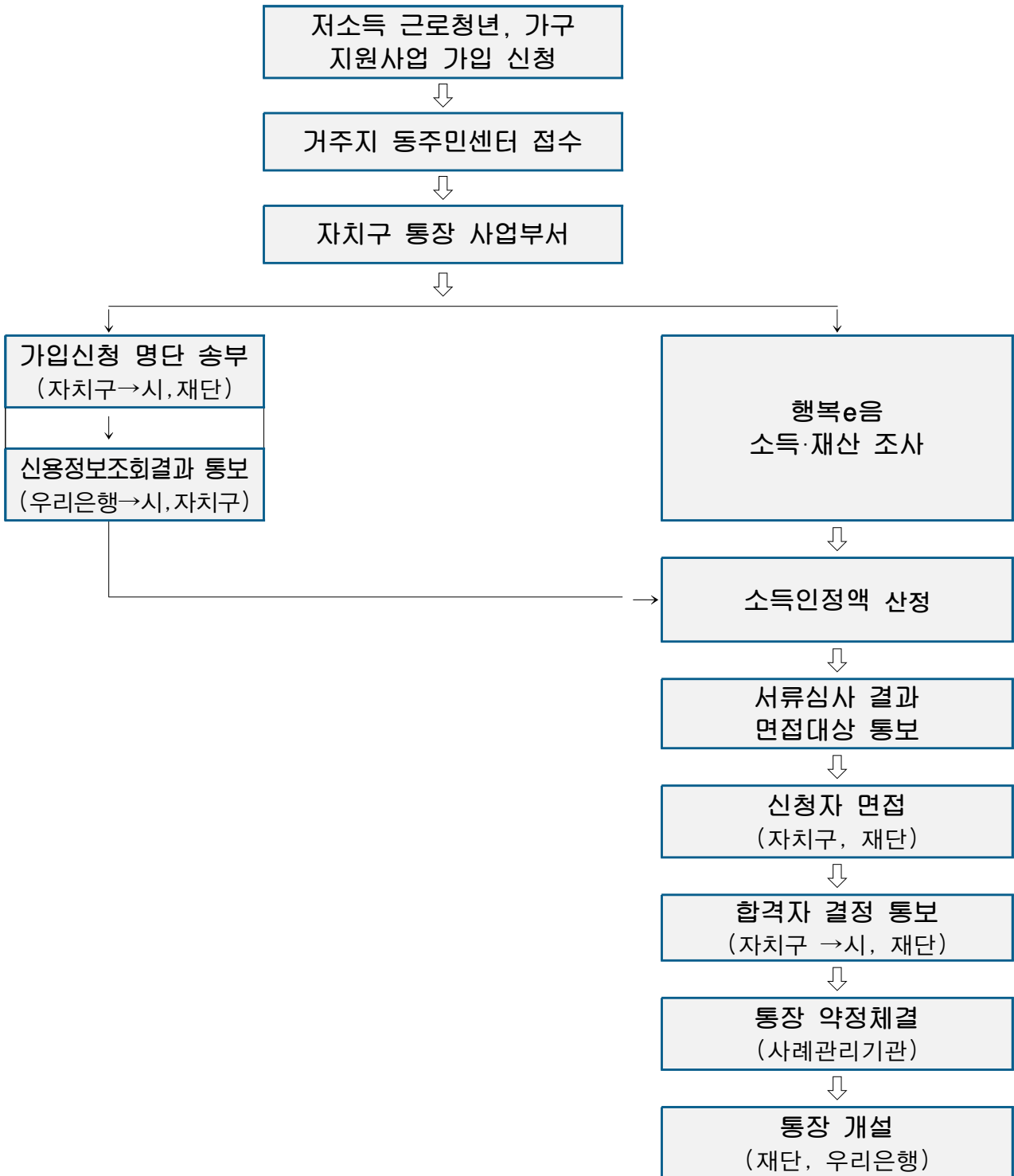
꿈나래 통장 자치구별 선발인원

□ 자치구별 선발인원 배정

○ 자치구 모집인원 : 자치구별 일반수급자 비율로 배정('18.1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수급자수	배정인원	연번	수급자수	수급자수	배정인원
1	종로	3,639	7	14	마포	7,155	14
2	중구	3,846	8	15	양천	10,085	20
3	용산	5,700	11	16	강서	20,311	40
4	성동	6,885	14	17	구로	7,889	16
5	광진	7,352	15	18	금천	9,048	18
6	동대문	11,084	22	19	영등포	7,302	15
7	중랑	14,742	29	20	동작	7,578	15
8	성북	11,970	24	21	관악	12,751	25
9	강북	14,664	29	22	서초	4,693	9
10	도봉	10,317	21	23	강남	10,577	21
11	노원	23,395	47	24	송파	9,178	18
12	은평	15,205	30	25	강동	9,182	18
13	서대문	7,065	14	합 계		251,613	5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선발절차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심사시 참고자료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대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어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주거용 재산의 범위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 * 토지·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 기본사항

-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저축유지 관련

-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①본인 희망시, ②금융교육 불참, ③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⑤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⑥다른 시·도로 이주 - 단, ⑥의 경우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별 제출서류

필수서류(6종)

첨부서류	양식	비 고
① 가입신청서	[붙임1호]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붙임2호]	- 작성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3호]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붙임4호]	-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붙임5호]	-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선택서류(2종)

첨부서류	양식	비 고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붙임6호] [붙임7호] 중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붙임6호]고용·임금확인서에 사업장 확인 후 제출 - [붙임7호]일용근로사실확인서 신청자 작성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개인회생중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서식(1 ~ 7호)

[제1호] 가입신청서 [필수]

[제2호] 가구원소득신고서 [필수]

[제3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수]

[제4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필수]

[제5호]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수]

[제6호] 고용.임금 확인서 [선택]

[제7호] 일용근로 사실 확인서 [선택]

【붙임 제1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모든 금액 단위는 원으로 기재하세요.

※ 음영(■)부분은 본인 작성 제외란입니다(자치구에서 확인후 기재).

☞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 확인란	소득·재산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부모 및 배우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가구 제외		확인자 구: _____ (인) 동: _____ (인) ※ 주민센터 담당 및 자치구 담당자 날인
	가구특성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장애인 부양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3자녀이상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가정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어르신부양 <input type="checkbox"/> 자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일반저소득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 작성	저축기간	24개월 <input type="checkbox"/>	월 저축금액	10만원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15만원 <input type="checkbox"/>
	저축목적	<input type="checkbox"/> 주거자금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input type="checkbox"/> 교육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 저축기간, 저축액, 목적은 약정시 변동 불가하므로 신중히 체크

I. 기본정보

신 청 자 본 인 적 사 항	신 청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 새 주소로 기재한 후, 괄호 안에 구 동명 기재 전화(집) : _____ 휴 대 폰 : _____				
	서울시 거주기간	년	개월	※ 서울시에 연속거주한 기간(타사도 이주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한 날부터 계산)		
	비 상 연 락 망	관 계		성 명		연 락 처
	결 혼 상 태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 직 기 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하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학 력	<input type="checkbox"/> 초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중졸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재학중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근 로 상 황	직 업			근무처명		
	근무처 주소	□□□□□ ※ 새주소로 기재한 후, 괄호 안에 구 동명 기재 전화 : _____				
가 족 상 황 (본인포함) ※ 굵은 선 안에 항목은 <별자>를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함	성명	연령	관계 <별자>	직업 <별자>	장애유형(등급) <별자>	동거여부 (○, X)
			1.본인		()	
					()	
					()	
					()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필수 작성 형제·자매, 자녀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면 작성						

II.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신청동기 · 저축액 마련계획 · 저축액 사용계획	<p>* 저축목적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중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음. 하나의 목적을 선택하시고 왜 그 목적을 선택하셨는지 자세히 기재. (※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불가, 학자금 제외)하시고, 저축액 마련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p>
<p>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p> <p>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p> <p>3. 본인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18 . . .</p> <p>신청자 성명 (서명)</p> <p>※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p> <p>()구  서울시복지재단</p>	

<가입신청서 별지>

※ 가입신청서 중 가족사항 굵은 테두리 안의 항목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번호를 신청서 해당칸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상황 선택지>

관 계	직 업	장 애 유 형
1. 본인	1. 상용직	1. 지체장애
2. 배우자	2. 임시직(계약직)	2. 뇌병변장애
3. 자녀	3. 일용직	3. 시각장애
4. 부모님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4. 청각장애
5. 형제자매	5. 자영업자	5. 언어장애
6. 친인척	6. 무직	6. 정신지체
7. 지인		7. 발달장애
		8. 정신장애
		9. 건강장애(심장, 간 등)
		10. 비등록장애인
		11. 기타 ()

【붙임 제2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가구원 정보(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소득여부 (공고일 기준)	미소득시 사유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원 소득활동정보

연번	성명	구분	소득활동내용
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2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3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위 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

신청자 : (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기관,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서울시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고객님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 . .

신청자 : (인)

【붙임 제4호】

회색(음영) 부분만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류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회용 서류로서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_____)					휴대전화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²⁾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³⁾	수급자 와의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⁴⁾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 2) 해당자에 한함
-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⁵⁾ <input type="checkbox"/> 기타 ⁶⁾)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동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U+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학비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기타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확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위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II)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⁷⁾ ()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희망두배 청년통장
< 유의 사항 >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확 인 (√ 체크) <input type="checkbox"/>
2.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8.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정지,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p>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 신청인)⁸⁾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p>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이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동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주소												
	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년 개월)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구분	'174월	'175월	'176월	'177월	'178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	'18.2월	'18.3월
	근무일수												
	기본급 (단위 : 원)												
	각종수당 (단위 : 원)												
	기타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p>상기와 같이 현재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 년 월 일</p> <p>○ 사업장명 : _____</p> <p>○ 사업장주소 : _____ ☎ 전화번호 : _____</p> <p>○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_____</p> <p>○ 사업주명 : _____ (인)</p> <p>○ 작성자 : 직급 _____ 성명 _____ (인)</p>													
※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_____ (인)			
<p>※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는 물론,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선정 취소될 수 있고, 추후 서울시·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p>													

【붙임 제7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참 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실 확인 내용 (일용근로 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지급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장 명						
사실 확인 내용						
<p>1. 상기 본인은 과거에 상기와 같이 일용근로를 한 바 있음을 신고합니다.</p> <p>2.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중도 해지 및 본인적립금 외 근로장려금 미지급)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2018 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참 가 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_____ 구 .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꿈나래통장』 가입안내문

꿈나래 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꿈나래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으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외) 또는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을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서는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참가자 의무사항

○ 기본사항

-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연계 복지시설로서 따로 공지됨)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참가기간 중 자치구간 이동 시 관할 구청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유의바랍니다.

○ 저축유지 관련

-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 5년) 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매칭지원액은 지원불가)
-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①본인 희망시, ②금융교육 불참, ③연속 3회 이상 미저축, ④누적횟수 7회 이상(3년 약정), 11회 이상(5년 약정) 미저축, ⑤참가아동에 대한 양육의무 수행 불가시, ⑥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⑦다른 시·도로 이주

- 단, ⑦의 경우 최초 이주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시 심사 후 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단시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4. 저축액 사용처

- 꿈나래 통장 적립금은 참여아동의 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사업종료 후 서울시복지재단과 약정한 해당 아동의 교육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신 경우 매칭지원금 및 매칭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꿈나래통장 신청자별 제출서류

필수서류(5종)

첨부서류	양식	비 고
① 가입신청서	[붙임1호]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붙임2호]	-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3호]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붙임4호]	-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붙임5호]	-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개인회생증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법원 발급), 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제출

꿈나래통장 신청서식

꿈나래 통장 관련서식(1 ~ 5호)

[제1호] 가입신청서

[제2호] 가구원소득신고서

[제3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4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5호]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붙임 제1호】

『꿈나래 통장』 가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모든 금액 단위는 원으로 기재하세요. ※ 음영(■)부분은 구에서 기재)
 ☞ 모든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가아동"은 가구당 만 14세 이하 자녀 중 1명만 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선정되신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역별 사례관리기관과 연락관계를 가지며, 금융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 확인란	소득·자산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비수급자 ※ 수급자는 중복체크 가능	확인자 : 구: _____ (인) 동: _____ (인)
	가구 특성 ※중복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장애인 부양 <input type="checkbox"/> 법정모자가정 <input type="checkbox"/> 법정부자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3자녀이상 <input type="checkbox"/> 국가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새터민 가정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어르신 부양 <input type="checkbox"/> 자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일반 저소득 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민센터 담당 및 자치구 담당 날인

저 축 액	5만원 <input type="checkbox"/>	7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저 축 기간	3년 <input type="checkbox"/>	※본인저축액에대한 매칭적립금지원 - 생계·의료수급자 100% - 기타 50%
	12만원 <input type="checkbox"/>	※ 12만원은 3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만 신청 가능			5년 <input type="checkbox"/>	

※ 저축액 및 저축기간은 약정시 변동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 표시

I. 기본정보

신청자(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	--------	---------	--

참가아동 성명	참가아동 주민등록번호
---------	-------------

집 주 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새 주소로 기재한 후, 괄호 안에 구 동명 기재 • 전화(집) : • 휴대폰 :
-------	--

비 상 연 락 망	관 계	성 명	연 락 처
-----------	-----	-----	-------

결 혼 상 태	<input type="checkbox"/> 기혼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사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학 력	<input type="checkbox"/> 초졸 이하 <input type="checkbox"/> 중졸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재학중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이상
-----	--

서울시 거주기간	년	개월	※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타 시·도 이주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전입한 날부터 계산)
----------	---	----	---


가 족 상 황 (본인포함)	성 명 연 령	관계 <별자>	직업 <별자>	장애유형등급 <별자>	동 거 여 부 (O, X)
※ 굵은 선 안에 항목은 <별자>를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함		1.본인		()	
				()	
				()	
				()	
				()	

※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참가아동은 세대분리시에도 포함하여 작성

가구 자산·수입	거주 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원) <input type="checkbox"/> 월세(보증금 : 원/월세 : 원)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임대주택(보증금 : 원/월세 : 원) <input type="checkbox"/> 무상거주(소유자 :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형제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 동 차	<input type="checkbox"/> 있음(차종 : / cc/ 년식) <input type="checkbox"/> 없음
	금 융 자 산	<input type="checkbox"/> 예·적금(총 원) <input type="checkbox"/> 대출금(총 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토 지	<input type="checkbox"/> 있음(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기 타 자 산	<input type="checkbox"/> 있음(건명 : , 시가 : 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가구 총 월 수입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원(본인 : 원 / 가구원 : 원)
-----------	---

※ 동일세대 구성원의 자산,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배우자가 세대분리시에도 가구 자산수준 및 소득 사항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II.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신청동기 · 저축액 마련계획 · 저축액 사용계획	<p>* 참가아동 교육비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양육계획에 따라 기재, 저축액 마련 계획 등 포함하여 작성.</p>
<p>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p> <p>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p> <p>3. 본인은 꿈나래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p> <p>위와 같이 '꿈나래 통장' 가입을 신청합니다.</p> <p>2018 . . .</p> <p>신청자 성명 (서명)</p> <p>※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구  서울시복지재단</p>	

<가입신청서 별지>

※ 가입신청서 중 가족상황 굵은 테두리 안의 항목에 대한 선택지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번호**를 **신청서 해당칸에 기입**해주세요.

<가족상황 선택지>

관계	직업	장애유형
1. 본인	1. 상용직	1. 지체장애
2. 배우자	2. 임시직(계약직)	2. 뇌병변장애
3. 자녀	3. 일용직	3. 시각장애
4. 부모님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4. 청각장애
5. 형제자매	5. 자영업자	5. 언어장애
6. 친인척	6. 무직	6. 정신지체
7. 지인		7. 발달장애
		8. 정신장애
		9. 건강장애(심장, 간 등)
		10. 비등록장애인
		11. 기타()

『꿈나래통장』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가구원 정보(만 18세이상 동일가구원)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소득여부 (공고일 기준)	미소득시 사유
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학업 <input type="checkbox"/> 질병·장애 <input type="checkbox"/> 육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구원 소득활동정보(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원만 작성)

연번	성명	구분	소득활동내용
1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2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3		취업상태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자영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발급여부(<input type="checkbox"/>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발급)
		직장(사업장)주소	
		근무기간	. . . ~ . . . (. 년 . 개월)
		월 평균 소득 (최근 3개월)	원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일수 : . 일)

위 사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신청자 : (인)

『꿈나래통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기관,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서울시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고객님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꿈나래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 . .

주 소 :

신청자 : (인)

【붙임 제4호】

회색(음영) 부분만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류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회용 서류로서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묘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²⁾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³⁾	수급자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⁴⁾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3)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4)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⁵⁾ <input type="checkbox"/> 기타 ⁶⁾)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U+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노인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학비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지원]	
기타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확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희망키움통장(II)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⁷⁾ ()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의뢰 및 연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꿈나래통장	
< 유의 사항 >		확 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2. 장애인연급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급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6.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8.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p>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 신청인)⁸⁾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p>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5)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개인운영시설 거주자, 6) 가정위탁(임양대상),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자,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8)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동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Q&A

본 자료는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관한 Q&A로서,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되어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서울형 자립지원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41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가구 :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 2,000가구
- ❖ 저축목적 : 저소득 근로청년의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거자금, 결혼자금, 소규모창업·운영자금, (학자금 대출 외 일반부채상환 등 불가)
- ❖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신용유이자자의 경우 ④ 요건 충족)
 - ① 공고일('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
 - ② 공고일('18. 3. 15)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1983. 3. 16.~2000. 3. 15. 출생
 -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 부양의무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 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 ❖ 신청자격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이자인 경우(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 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중 1부 제출)
 -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⑧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⑨ 지방세 완납 증명서(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 ❖ 신청기간 : '18.3.15(목)~4.6(금), 주소지 동주민센터 ➡ '18.9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
- ❖ 지원내용 : 10/15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 2년/3년간 저축하면 1:1 금액을 지원함(이자 별도)

■ 핵심 질의답변 ■

사업취지, 자격기준 관련		사업추진일정 관련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 방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거주기간 작성방법은? - 공고일('18.3.15) 기준으로 계산함 ※ 서울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임 중간에 타시도 전출입시 최종 서울시 전입일 기준 역산함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및 기준 - 참가자 : 본인소득 세전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input type="checkbox"/> 선정은 어디에서? - 자치구에서 1차 대상자 추천 후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 등 최종 자격확인 후 참가자 선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6개월 또는 재직기준 근거 - 2, 3년간 정기적 저축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의 근로기준 필요		<input type="checkbox"/> 참가자 선발일정은? -신청접수 : '18. 3.15(목) ~ '18. 4.6(금) ➔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격조사, 1차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선정 (자치구) : '18. 8. 6(월)까지 -2차 면접 : '18.8.18(토)~19(일), 8.25(토)~26(일) -면접통과자 선정 : '18.8.29(수) -최종 참가자 발표 : '18. 8.31(금) 예정 -약정체결 : '18. 9.12(수)~'18. 9.17(월) -통장개설 : '18. 8.17(월)~'18. 8.21(금) -저축시작 : '18. 9월 ➔ 9월부터 저축	
<input type="checkbox"/> 신청구비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중 1부 제출)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⑧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⑨ 자방세 완납 증명서(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input type="checkbox"/> 적립 중단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① 본인희망으로 인한 중단 또는 ② 저축기간 내 연속 3회 또는 저축기간 중 총 7회 이상 적립통장에 저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또는 ④ 금융교육(연1회) 불참시 지원 중단됨 ➔ 본인저축액+이자만 지급 (근로장려금 미지급) ※ 단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중단필요시 신청하면 심의 후 최대 6개월간 중지가능 (중지기간 중 근로장려금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왜 서울시민만 참여 가능한지? - 시비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민만 참여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타 시도 이전시 계속 저축 가능한지? - 서울시내 이주는 계속 지원되나 타 시도 이주시 중도해지됨		
<input type="checkbox"/> 신용유의자도 지원가능한지?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일 경우 신청불가능 ※ 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위 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input type="checkbox"/> 통장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는지? -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발행됨. 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참가자들의 저축여부에 따라 매칭 금액이 함께 적립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임.		
<input type="checkbox"/> 주요 선정기준은? -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기간 및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저축계획, 자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input type="checkbox"/> 면접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 '18.8월 중에 주말을 이용해서 면접 실시 예정 <input type="checkbox"/> 향후저축일정은? - '18. 9월 최종 확정 이후 9월부터 저축 실시		

■ 2018년 모집부터 달라진 점 ■

구 분	2017년 사업 (기존)	2018년 사업 (변경)
모집인원	1,000명 1회	2,000명 1회
신청자격	- 본인 소득금액 세전 200만원 이하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 본인 소득금액 세전 220만원 이하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신청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⑧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⑨ 지방세 완납 증명서(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저축액	5/10/15만원 중 선택	10/15만원 중 선택

사업 취지·배경 관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 저소득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 중 10,15만원(중 택1)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함께 매칭 적립하게 됩니다.

※ 저축가능금액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목적은?

☞ 학자금 대출,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청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함은 물론 건전한 자산관리 능력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빈곤층의 특별한 저축에 대하여 서울시 및 민간이 매칭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빈곤층의 인적·물적·사회적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후 자립이 가능합니까?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모색 중입니다.
- ☞ 주거자금 마련목적으로 저축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축만기 후 적립액으로 주택구입은 어렵지만 월세에서 전세로의 변경시, 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며, 향후 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금전적으로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습관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선발과정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신청자격 : 아래 ①~④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 ① 공고일('18. 3. 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
 - ② 공고일('18. 3. 15)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1983. 3. 16.~2000. 3. 15. 출생
 -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부양의무자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 소득은 미반영

☞ 신청자격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 의자인 경우(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 워크아웃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 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 소득인정액 산출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은,

- 대 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22,800만원을 공제
- 중소도시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3,600만원을 공제
- 농 어 촌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10,150만원을 공제

☞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이며, 토지·건축물등 기타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제외	월 1.04%		월 4.17%	

☞ 소득인정액 산출은 신청자 부모,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가리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기존의 최저 생계비를 대신해 생계급여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 본인 소득금액 세전 220만원 이하와 부모, 배우자 소득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4. 현재 재직 중 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 2년~3년이라는 장기 저축기간 동안 참가자 본인의 저축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5. 미혼 및 기혼 일 경우 신청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신청자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 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와 자녀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기혼자는 배우자와 부모(배우자 부모는 제외) 모두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

- 주민등록상 등재된 형제, 자매 등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포함하지 않음

6. 부모 중 한 명과는 동거하고 한 명과는 별거 중인 경우, 부모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별거 중일 경우에도 부·모 모두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별도의 서류(가족관계 단절확인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을 했습니다. 신청하려면 누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시에는 본인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8. 한 가구의 형제 자매가 동시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한 가구에 여러 명 인 경우 한 명만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아버지(또는 어머니)께서 희망플러스 통장(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입니다. 자녀인 저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존에 부모님이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 가입자인 경우, 해당 자녀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도 신청 불가 합니다.

10. 신청자의 부채가 5천만원(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제외) 이상이거나 신용유의자이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시비와 민간후원금으로 '목돈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므로 부채가 많거나 신용유의자이어서 부채상환 또는 신용유의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11. 직장을 바꿔가며 근로(일)를 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업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소정양식)를 발급받아 오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일용직 근로자는 일용

근로사실확인서(소정양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서류접수 후 관할 구청에서 공적 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을 인정합니다.

13.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15.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거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16.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합니까?

☞ 현재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가능하나, 참가대상자 중 저축기간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되며 본인저축액 및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방으로 이사 갈 것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므로 신청 시 이점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7. 보험료 약관 대출 등의 경우에도 부채의 범위에 해당됩니까?

☞ 부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따라 부채 및 신용유의 여부를 받으면 부채, 보증액, 현금 서비스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부채의 범위에는 보험료 약관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예금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보험료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액 범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상환 능력이 불가할 경우 본인 환급액이 제외되므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상환이 확보될 수 있는 담보 대출인 보험료 약관대출, 예금 담보 대출은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대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8. LH, SH공사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부채에 해당되는지요?

☞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 SH공사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후 신청자에게 재 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계약이 만료시에도 LH, SH공사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 신청자의 동주민센터 접수방법은?

☞ 신청자 및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접수방식과 동일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와 별도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우선돌봄차상위 신청서류**를 접수 후 행복e음에 입력 합니다.

☞ 신청자 엑셀 명단 서식은 수급자 신청서류와 함께 통합조사팀에 즉시 송부하여 전산조회를 의뢰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명단 별도 작성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 담당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21.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므로 자산조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금융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구에서 취합하여 1차 서류 심사 후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다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발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근무경력, 소득 및 재산, 저축계획, 자립의지 등이며,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활의지가 강하고, 목표의식이 분명하며, 자산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립의지이므로** 신청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면접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지 않고 참가자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하실 수 있는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반드시 면접심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접심사는 신청자의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주말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24.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보게 되나요?

☞ 금융전문가 및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2인 1조의 선정위원회에 의해 실시됩니다.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사업 이해도 및 동의정도, 본 사업에의 참여의지, 자립·자활의지 등을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신청구비서류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근로소득자(7종) : ①~⑦의 근로소득 확인서류 제출
 - ① 가입신청서
 -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 작성)
 -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전원
 -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중 1부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⑧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 ⑨ 지방세 완납 증명서(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 ▶ 개인회생중인 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 ※ 필요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제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왜 작성해야 하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본 사업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채가 많거나(5,000만원 이상) 신용유의자이어서 부채상환 또는 신용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분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 신청자의 신용유의여부, 가구의 부채규모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조회를 위해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와 배우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3.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 ☞ 고용임금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되나,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로경력은 있으나 영세업장 근로로 인해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일용근로사실확인서(소정양식)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접수 후 구청에서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근로로 인정합니다.

저축 신청·유지·해지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설은 어느 은행에서 하나요?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은행을 지정하여 저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협약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최종 참가자로 선발되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적립금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 서울시복지재단이 하며, 계좌관리는 협력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참가자는 1인당 2개의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한 개는 참가자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저축액적립통장”으로 본인이 보관 및 관리하고, 다른 한 개는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매칭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지원 통장”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이 보관 및 관리합니다. 통장은 참가자 동의를 받은 후(약정 체결) 참가자 명의가 아닌 저축액 관리기관(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하게 됩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들의 저축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가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매칭지원을 위한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참가자로부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저축만 하면 되나요?

- ☞ 본 사업은 저축을 통한 목돈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이나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참가하시는 중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저축 개시월부터 금융교육을 진행하며, 참가자는 필수적으로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인정하는 저축사용목적과

관련된 주거·창업·결혼 관련 교육 등도 금융교육으로 허용합니다) 이 밖에도 참가자 선택프로그램으로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특별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 ☞ 재무컨설팅은 신청한 가구 중 선별하여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컨설턴트가 가구별 수입·지출진단, 자산·부채진단, 미래의 자산흐름분석, 위험관리분석을 실시한 후, 종합점검표를 제공하여 가계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이외에도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기관(자치구, 사회복지시설, 후원기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참가자를 지원합니다.

5.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근로장려금은 누가 제공하나요?

- ☞ 서울시 예산 및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의 공동후원금으로 지원합니다.

6.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기본적으로 2년·3년 동안의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희망시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게 됩니다.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축통장과 근로장려금지원통장 2종류의 통장이 개설되나, 통장 명의는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 모두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저축기간 중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기간 중 중도해지를 희망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7.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 ☞ 참가자는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하고, 미납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3년의 적립기간 동안 총 7개월, 연속 3개월 이상 미납시 자동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 ※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신청을 통해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중도해지시 본인저축액과 본인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저축기간의 타시·도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및 저축기간 중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참여 조건이 맞지 않아 자동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원됨)

8. 저축 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이며, 중도해지할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 참가자는 ① 본인의 중단 의사에 의한 경우 ② 3년간 총7회, 연속 3개월 이상 사전신청 없이 저축하지 않는 경우 ③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시 ④ 필수 금융교육 불참 시 ⑤ 신청자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⑥ 타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①~⑤에 의한 중도해지시 그동안의 본인저축액과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일체 지원되지 않으나, ⑥ 타시·도 이주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거주일 이전일 기준으로 저축기간의 2/3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시점까지의 근로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서울시복지재단과 참가자 간에 사전약정을 맺게 됩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 중 50% 이상 근로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시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간(%)별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원 받게 됩니다.

(참고)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9.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아닌 일시중지가 가능하나요?

☞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의 이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일시중지 신청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최대 6개월간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개인사정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기간 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본 사업은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초 이주일자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1.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적립액 사용처(교육·주거·창업·결혼자금)를 제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용처를 교육, 주거, 창업, 결혼자금으로 제한한 이유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출항목으로, 최초 가입시 뚜렷한 목표설정을 함으로써 저축의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및 지원규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사업은 개인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10만원/15만원)하면, 1:1금액을 매칭해서 지원받게 되고, 3년 후 목돈을 적립하게 됩니다.

☞ 매월 10만원/15만원의 저축액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저소득층 7,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소득 중 월평균 15만원~30만원을 저축하는 세대가 20.1%, 30만원 초과 저축세대는 17.3%으로 나타나,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 10~15만원의 저축액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3. 저축일과 매칭지원 일지는 어떻게 되나요?

☞ 저축은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매월 25일까지 입금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월말까지 입금하게 되면 저축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한 후 다음 달에 근로장려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14. 저축기간을 완료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자가 제출한 적립금 사용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승인한 후 적립액을 인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종료 후 1년간 사례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 군인도 참가 가능한가요 ?

☞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지만, 군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군복무중인 사람은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은 신청가능 합니다.

16. 작년엔 청년통장 참가 후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

☞ 중도해지 후에는 청년통장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7.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 방법

1. 사통망 상담·신청 - 초기상담 메뉴를 클릭



2. 초기상담에서 신청자 입력 조회

『대상자 정보관리』에서 신청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 - 『상담내용』 요청접수 클릭, 『가구구성』 클릭하여 주민전산상 가구원 입력 - 『접수경로』는 대상자 요청으로 체크- 가구유형, 주거유형, 상담내역 입력 - 『대상자유형구분』에서 기초생활보장 체크 후 상담자 종합의견 입력 -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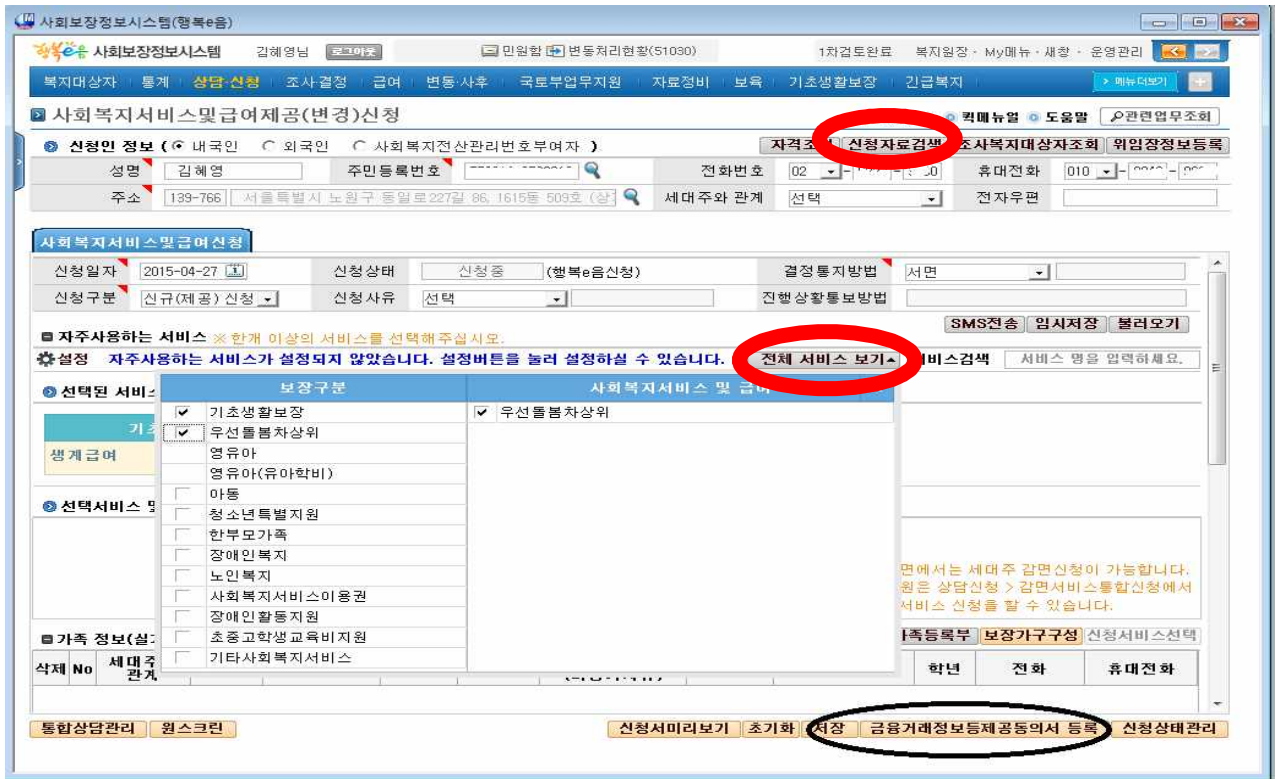


3. 공공서비스 신청 클릭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변경) 화면으로 이동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화면

『신청자료검색』 클릭 하여 초기상담에서 입력한 대상자 불러옴 - 신청일자, 신청구분 입력 - 『전체서비스보기』 클릭, 보장구분을 기초생활보장 내지 우선돌봄 차상위로 체크. 가구원입력- 부양의무자 가구입력 후 『저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5. 동주민센터 행정사항

- 통장사업 신청자 사통망 전산 입력 철저 후 사회복지과 요청 공문
 - 부양의무자인 부모, 배우자, 자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구원 추가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신청 요청할 것 ,
 - 신청서류 2부로 만들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송부해 줄 것
- 통장사업 신청시 소득 재산 관련 부분은 전산 자료를 우선하고, 신청 기준에 적합 하더라도 면접 심사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설명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자가 제출), 신청자 본인의 주소변동내역 있는 주민등록초본 및 가구원확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용) (담당공무원이 인증없이 확인용으로 일괄 출력) 첨부 필
- 통장사업 시행과 관련 홍보 철저
 -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 직능단체 회의를 회의자료 첨부, 포스터 부착 등

18. 제외국민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번호를 득한 외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9.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 ☞ 2018년 신규 청년수당 참가자(2중 수혜), 현재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신청 불가능 하나, 청년수당 참가 완료한 기존 참가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0. 이혼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 부, 모 모두 각각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부모님 중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구원해체사유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자료실 확인)를 제출 한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확인에서 제외합니다.

2018년 꿈나래 통장 사업 Q & A

본 자료는 ‘꿈나래 통장’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관한 Q&A로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가구 : 서울시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500가구
- ❖ 저축목적 : **약정한 자녀의 교육용으로 활용**(부채상환 등 기타 목적 활용불가)
- ❖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 ① 사업 공고일('18. 3. 15)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사업 공고일('18. 3. 15) 기준 만 14세 이하 자녀('04. 3. 15. 이후 출생아동)가 있는 부모(친권자)
 - ③ 사업 공고일('18. 3. 15)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 신청자격제외
 -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증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증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I·II” 및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 가입이 가능)
- ❖ 신청자격기준은 아동의 친권자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법정 후견인임
- ❖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신청기간 : '18. 3. 15(목)~'18. 4. 6(금),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8. 8. 31. 최종 선발(개별통보)
- ❖ 지원내용 : 5만원/7만원/10만원/12만원 중 선택하여 3년 또는 5년간 저축
(※ 단, 12만원은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저축액과 동일금액,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본인 저축액의 1/2금액을 지원함(이자 별도)

■ 2018년 모집부터 달라진 점 ■

구 분	2017년 사업 (기준)	2018년 사업 (변경)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80%	기준 중위소득 80%,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핵심 질의답변 ■

사업취지, 자격기준 관련		사업추진일정 관련	
<input type="checkbox"/> 만 14세 이하 이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input type="checkbox"/> 저축액과 저축기간은 누구나 선택가능한지?	- 저소득 가구의 자녀학력수준 저하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교육 자금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교육비 수요가 커지는 성장기 중학교 교육자금 및 대입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이동연령을 지정 - 저축액은 5/7/10/12만원 중 선택 단, 12만원은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 3자녀 이상 가구만 선택가능 - 저축기간은 3년/5년 중 선택	<input type="checkbox"/> 참가자 선발 일정은? <input type="checkbox"/> 적립 중단시 매칭지원액이 지급되는지?	-신청접수 : '18. 3.15(목) ~ '18.4.6(금) ➔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격조사, 1차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선정 (자치구) : '18. 8. 6(월)까지 -2차 면접 : '18.8.18(토)~19(일), 8.25(토)~26(일) -면접통과자 선정 : '18. 8. 29(수) -최종 참가자 발표 : '18. 8.31(금) 예정 -약정체결 : '18. 9. 12(수)~'18. 9. 17(월) -통장개설 : '18. 9. 17(월)~'18. 8. 21(금) -저축시작 : '18. 9월 ➔ 9월분 부터 저축
<input type="checkbox"/> 재산·소득기준 해당여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자,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input type="checkbox"/> 타 시도 이전시 계속 저축 가능한지?	① 본인희망으로 인한 중단 또는 ② 적립기간 내 연속 3회 이상 적립통장에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 중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는 총 11회 이상 적립통장에 저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또는 ④ 금융교육(연 1회) 불참시 지원 중단됨 ➔ 본인저축액+이자만 지급 (매칭지원액 미지급) ※ 단 실적, 질병 등의 사유로 중단 필요시 신청하면 심의 후 최대 6개월간 중지가능 (중지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신청구비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신청자 및 18세이상 동일 가구원의 서명, 신분증 필요)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⑧ 자방세 완납 증명서(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파산면책결정자는 법원판결문 ※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 (해당 법원 발급) 제출	<input type="checkbox"/> 자녀가 지방 거주시에도 신청가능한가?	- 서울시 내 이주는 가능하나 타 시도 이주시 중도해지 됨.
<input type="checkbox"/> 왜 서울시민만 참여 가능한지?	- 시비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민만 참여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통장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는지?	-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발행됩니다. 이는 꿈나래통장이 참가자들의 저축여부에 따라 매칭금액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방법은?	- 공고일('18. 3. 15) 기준	<input type="checkbox"/> 면접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 '18.8.18(토)~19(일), '18.7.25(토)~26(일) 면접 실시 예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유의자도 지원가능한지?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일 경우 신청불가능 (※ 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12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향후모집일정은?	- '18년 추가 모집 없음 '19년 신규 모집
<input type="checkbox"/> 주요 선정기준은?	- 서울시거주기간, 가구원수,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동기, 적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input type="checkbox"/> 선정은 어디에서?	- 자치구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심사로 1차 대상자 추천 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 등 최종 자격확인 후 참가자 선정		

사업안내

1. '꿈나래통장' 사업의 목적은?

- ☞ 소득계층별 교육투자비용 격차 확대로 인해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력수준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빈곤층 자녀의 교육자금 형성을 도와 저소득 가구 자녀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기회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생애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꿈나래통장은 무엇인가요?

- ☞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 본 통장에 가입한 후, 자녀교육자금 적립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매월 3~1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수급자) 또는 1/2금액(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기관이 함께 매칭 적립하게 됩니다.
- ※ 참가자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액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비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단, 12만원은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대상으로 한정

신청자격

1. 꿈나래통장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 ①~③ 조건 동시충족하면서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사업 공고일('18. 3. 15) 기준 만18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사업 공고일('18. 3. 15) 기준 만 14세 이하 자녀('04. 3. 15. 이후 출생아동)가 있는 부모(친권자)
- ③ 사업 공고일('18. 3. 15)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기준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 기준중위소득 90%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기준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등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I·II” 및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2. 주민등록상과 실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 ☞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현재 서울시민이고, 자격기준이 되지만 곧 경기도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신청가능합니까?

- ☞ 사업 공고일('18.3.1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축 참여자가 저축 기간 중 타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 해지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는 지금 서울에 있고,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주느라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꿈나래통장 신청은 신청자(아동의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녀가 지방에 있더라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부모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부부이나 별도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 조사의 범위는?

- ☞ 배우자 관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 조사 대상이 됩니다.

6. 신청자는 반드시 가구의 세대주이어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의 친권자(부모 중 한명)나 법정후견인(아동과 거주지 동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향후 참가자로 선정되면 서울시복지재단과 꾸준한 연락관계를 가지게 되고 금융교육에 연 1회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하므로 그런 점을 고려하여 참여가 가능하신 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아동의 법정후견인인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아동의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모자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한지요?

- ☞ 다른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거주지를 밝힐 수 없거나 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 폭력피해여성으로서 관련 시설 생활자 또는 2년 이내 퇴소자로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입소자의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시설퇴소여성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자치구 또는 공동주거지 등이 소재하는 자치구에서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산정 시 또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0. 신청자가 신용정보관리대상(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 ☞ 신용유의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증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증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11. 신청자는 신용정보관리대상(신용유의자)이 아닌데, 동일 가구원 중 신용정보관리대상(신용유의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신용정보관리대상(신용유의자)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LH, SH공사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부채에 해당되는지요?

- ☞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LH, SH공사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후 신청자에게 재 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계약이 만료시에도 LH, SH공사에서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보험료 약관 대출의 경우에도 부채의 범위에 해당됩니까?

- ☞ 부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은행에 문의결과,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따라 부채 및 신용불량 여부를 받으면 부채, 보증액, 현금 서비스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부채의 범위에는 보험료 약관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예금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보험료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액 범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상환 능력이 불가할 경우 본인 환급액이 제외되므로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상환이 확보될 수 있는 담보 대출인 보험료 약관대출, 예금 담보 대출은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대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4. 저소득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의 경우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소득인정액의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한 가구에 두 명 이상 가입할 수 있나요?

☞ 서울 꿈나래통장은 1가구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한 가구당 한 명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1. 꿈나래통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지역의 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꿈나래통장의 신청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 1매 필요
 - ②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⑦ 주민등록등본(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 ⑧ 지방세 완납 증명서(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파산면책자의 경우 위 제출서류에 파산면책판결문(법원) 추가 제출
※ 개인회생증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증인자로 10개월 채무변제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포함 제출

3. 꿈나래통장을 신청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구에서 취합하여 서류심사 및 금융정보조회를 거쳐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 법원으로 면책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 판결문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5. 법원으로부터 면책판결문을 받았는데도 계속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판결사항에 따라 몇 년간은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면책판결 건에 대해서 해제신청을 해서 해제되었으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제외국민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번호를 득한 외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추천 및 선발절차

1. 꿈나래통장 참가자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접수된 서류를 기반으로 각 자치구의 서류심사와 금융정보조회(지방세체납여부 포함)를 거쳐 참가 인원의 130%내외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면접심사를 통해 면접 합격자를 정하고, 최종 선정발표를 합니다.

2. 금융정보 조회는 왜 실시합니까?

- ☞ 신청자격제한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정보조회를 실시합니다.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신용정보관리대상)인 경우에는 꿈나래통장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정보조회를 거쳐 신용불량관계, 부채관계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심사결과, 동점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재산 →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4. 꿈나래통장 참가자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선발기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교육자금 활용과 자녀양육 계획이 구체적이고, 약정기간 동안 중단 없이 교육비 적립이 가능한 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5.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면접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지 않고 참가자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 ☞ 3년 또는 5년간 꾸준히 저축하실 수 있는 분을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반드시 면접심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면접심사는 신청자의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주말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6.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보게 되나요?

- ☞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2인 1조의 선정위원회에 의해 실시됩니다.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사업 이해도 및 동의정도, 본 사업에의 참여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합니다.

7.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가구원 중 2촌 직계존속(조부모) 이내 범위로 확인합니다. 삼촌, 이모 등은 제외 됩니다.

8. 3자녀 이상 가구 및 친권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가구원 중 3자녀 이상 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 자녀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기준(90% 이하)과 매칭지원기준(1:1)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나래 통장 참가아동은 만 14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여야 하므로 동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로 친권 확인 후 자격여부를 확인 합니다.

저축 관련

1. 꿈나래통장 개설은 어느 은행에서 하나요?

- ☞ 본 사업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가능하므로 신청자 본인이 은행을 지정하여 저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꿈나래통장 사업 협력은행은 '우리은행'입니다.

2. 저축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아동의 교육비 수요가 커지는 성장기 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14세 이하 아동이 성장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시기에 저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축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정했으며,
- ☞ 일정기간 꾸준히 저축하여 교육비 명목의 목돈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저축액은 어떻게 입금해야 하나요?

- ☞ 저축은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25일까지 입금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월말까지 입금하게 되면 저축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한 후 다음달에 매칭지원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4. 저축기간 중 참가자가 마음대로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 ☞ 통장은 본인 저축통장과 매칭지원통장 2종류가 만들어집니다. 통장의 명의를 참가자의 임의해약 방지를 위하여 모두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저축기간을 완료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제출된 적립금 사용계획 등을 확인하고 재단이 승인한 후 적립액을 인출하게 됩니다.
- ☞ 제출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립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 통장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 ☞ 저축현황 및 계좌관리는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협력은행이 함께 진행합니다.
- ☞ 참가자는 1인당 2개의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한 개는 참가자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저축액적립통장”으로 본인이 보관·관리하게 되고, 다른 한 개는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매칭지원하는 “매칭지원액통장”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보관·관리하게 됩니다.
- ☞ 통장은 참가자 동의를 받은 후 참가자 명의로 아닌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하게 됩니다.

7. 꿈나래통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꿈나래통장은 참여자들의 저축여부에 따라 매칭금액이 함께 적립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매월 저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참가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합니다.

8. 꿈나래통장의 매칭 금액은 어디서 제공되나요?

- ☞ 꿈나래통장의 매칭지원액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의 공동후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9.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축금액을 찾아갈 수 있나요?

- ☞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을 완료할 경우에만 찾으실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자녀교육자금 용도로만 사용가능합니다.

10. 꿈나래통장 가입 기간 중 저축한 금액이 많아져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나요?

- ☞ 원칙적으로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이름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저축기간 동안 참가자의 자산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적립금이나 저축기간 만료 후 적립액 지급시 자산이 한도를 넘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현금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 ☞ 참가자는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하고, 미납시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연속 3개월 이상이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는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일시중지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본인저축액과 본인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개인사정으로 꿈나래통장 가입 기간 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 본 사업은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초 이주일자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지원서비스 관련

1.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저축만 하면 되나요?

- ☞ 아닙니다. 매월 저축과 함께 연 1회 필수금융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필수금융교육시 소비자 교육, 자산관리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이 밖에도 부모(양육)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집중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재무컨설팅은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컨설턴트가 가구별 수입·지출진단, 자산·부채진단, 미래의 자산흐름분석, 위험관리 분석을 실시한 후, 종합점검표를 제공하여 가계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 ☞ 이 외에도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기관(자치구, 사회복지시설, 후원기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참가자를 지원합니다.

2. 매칭액 적립 외에 교육과 사례관리, 기타서비스 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매칭지원액 적립을 포함하여 금융, 부모(양육)교육을 제공하게 되며, 객석나눔 등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시설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선발, 협약하여 참가자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외의 관계
	주소			연락처

사실 확인 내용

○ 가족관계 해체 시점 :

○ 가족관계 해체 사유 :

○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태 :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향후, 상기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통장사업 탈락, 매칭 비용 환수)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